

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&A

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

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『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(http://easylaw.go.kr)』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,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『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』에서는 **2024년 3월 현재 서술형 268건, 사례형 18건 등 총 286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.**

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『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(웹페이지: <http://easylaw.go.kr>. 모바일앱: Smart 생활법률)』에 접속하셔서 ‘백문백답’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
네일샵 창업·운영

01

Q | 네일샵에 취직해서 몇 년 경험을 쌓고 네일샵을 창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. 특별한 자격이나 허가가 필요한가요?

A | 네. 손톱과 발톱을 손질·화장하는 일을 네일미용업이라고 하는데요. 이러한 네일미용업에 종사하거나 네일샵을 창업하려면, 관련 교육을 받거나 미용사(네일) 자격을 취득한 후에 미용사(네일)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.

● 미용사(네일) 면허

- 네일샵을 창업하거나 네일미용업에 종사하려면 미용사(네일)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8조제1항 본문).
- 다만, 미용사(네일)의 감독을 받아 네일미용업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합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8조제1항 단서).

● 미용사(네일)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
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(네일)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6조제1항).
-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
-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
-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
- 초·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
※ 네일미용업 국가자격증 취득

- 미용사(네일) 국가자격증 시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(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 제14조제3항, 제20조제1항·제3항,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 및 별표 8).

필기시험	네일화장품 적용 및 네일미용관리(공중위생관리학, 피부의 이해, 화장품 분류 포함) 등에 관한 사항
실기시험	네일미용 실무
합격기준	필기시험 60점 이상 실기시험 60점 이상

- 미용사(네일) 국가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(www.q-net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■ 위반 시 제재

- 면허를 받지 않고 네일샵을 창업하거나 네일미용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0조제4항 제6호).

● 미용사(네일)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
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(네일)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6조제2항,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6조 및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3항).
 - 피성년후견인
 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(전문가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)
 -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(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)환자
 -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
 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7조제1항제2호, 제4호,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

● 미용사(네일) 면허증 발급

- 미용사(네일)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미용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면 면허증이 발급됩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4항 및 별지 제8호서식).

02

Q | 드디어 미용사(네일) 면허증을 받았어요. 지하철 역 근처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려고 하는데, 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바로 영업을 시작 해도 되나요?

A | 네일샵 영업을 시작하려면 시·군·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, 영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.

● 네일샵 영업신고

- 네 일샵 영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를 미리 갖추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)에게 네일미용업에 대한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제1항 전단,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 및 별표 1 II 제4호가목).
 - 네일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
 - 소독기·자외선살균기 등 네일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
- 네일샵 영업신고를 하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즉시 영업신고증을 받습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3항 전단 및 별지 제2호 서식).
 - 위반 시 제재
 - 네일샵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[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1조제1항제1호·제20조제2항제1호,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9조 및 별표 7 II 제4호가목1)].
 - 위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 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1조제1항제1호,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9조 및 별표 7 II 제4호가목2)].

● 네일샵 사업자등록

- 네일샵 영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다른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(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1항 및 제2항).
- 사업장이 둘 이상인 네일샵 영업자(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)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(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3항).
-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적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받습니다(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,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1조제5항 본문,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서식).
- 위반 시 제재
 - 네일샵 영업자가 신청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%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(「부가가치세법」 제60조제1항제1호).

03

Q | 네일아트를 하면서 생기는 상처로 세균 감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데요.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?

A | 네일아트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은 소독해서 관리해야 하고, 영업신고 전 뿐 아니라 영업을 하는 중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● 네일샵 시설 및 설비 관리

- 네일미용업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,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4조제1항 및 제4항).
 -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네일 미용을 할 것
 - 네일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,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명에 한해 사용할 것
 - 미용사(네일)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
- 네일 미용기구(푸셔, 토우세퍼레이터, 라텍스, 퍼프 등)는 감염 및 바이러스 전파 또는 자체 감염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구를 사용한 후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합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조, 별표 3 및 「이용·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호, 2021. 1. 5. 발령·시행)).
 - 표면에 붙은 이물질 등을 제거할 것
 - 위생티슈 또는 소독액이 묻은 천이나 거즈로 날을 중심으로 표면을 닦을 것
 - 세척 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행구고 물기를 제거할 것
 -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할 것

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



■ 위반 시 제재

- 위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1조제1항제4호,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9조 및 별표 7 제4호라목).

● 위생교육 이수

- 네일샵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에, 네일샵 영업자는 영업을 하는 중에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제1항 및 제2항).
-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며,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항 및 제2항).
 - 교육시간 : 3시간
 - 교육내용 : 「공중위생관리법」 및 관련 법류, 소양교육(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), 기술교육, 그 밖에 공중위생에 대한 필요한 내용
- 미용업(네일) 위생교육은 (사)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8항 및 「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39호, 2016. 8. 1. 발령·시행) 제2호).
- 위반시 제재
 - 위의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2조제2항제6호,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 및 별표 2 제2호파목).

04

Q | 손님 가방이나 휴대품을 별도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는데, 사물함에 넣어둔 물건이 없어졌어요. 이런 경우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나요?

A | 네일샵 영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물건 분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
●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

- 네일샵 영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(滅失)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(「상법」 제152조제1항).
- * “공중접객업자”란 극장, 여관, 음식점이나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, 네일샵 영업자도 공중접객업자에 포함됩니다(「상법」 제151조).
- 네일샵 영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(「상법」 제152조제2항).
-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네일샵 영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(「상법」 제152조제3항).

● 고가물에 대한 책임

- 화폐,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(高價物)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(價額)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네일샵 영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(「상법」 제153조).

● 고객 보호 의무

- 네일샵 영업자는 네일미용업을 통해 고객에게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(「소비자기본법」 제19조제1항).
 - 만약, 네일아트로 인해 손톱에 염증이 생기는 등 손님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네일샵 영업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,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(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-28호, 2023. 12. 20. 발령·시행) 별표 2제17호).
- 네일샵 영업자는 네일미용업을 제공할 때에는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(「소비자기본법」 제19조제2항).
- 네일샵 영업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네일미용업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(「소비자기본법」 제19조제3항).
- 네일샵 영업자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해야 합니다(「소비자기본법」 제19조제4항).
- 네일샵 영업자는 네일미용업의 하자에 따른 고객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 하거나 보상해야 하며,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(「소비자기본법」 제19조제5항).

05

Q | 나름 열심히 네일샵을 운영했지만,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폐업을 결정했습니다.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?

A | 네일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·군·구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, 사업자 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및 4대 보험에 대한 탈퇴·소멸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.

●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

- 네일샵 영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)에게 네일미용업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제2항 본문).
- * 다만,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제2항 단서).
- 관할 세무서장이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네일미용업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(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3제5항).

●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

- 사업자등록을 한 네일샵 영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(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 전단 및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).
-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(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3조제3항).

● 4대 보험 탈퇴·소멸신고

- 네일샵 영업자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네일샵 영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(「국민연금법」 제21조제1항 및 「국민연금법 시행규칙」 제4조 전단).
-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네일샵 영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조제2호 및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3항제1호).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네일샵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(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호).

